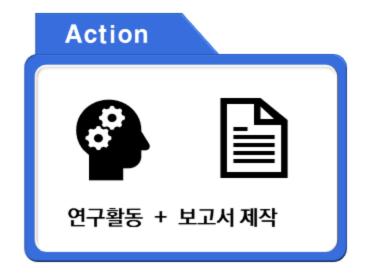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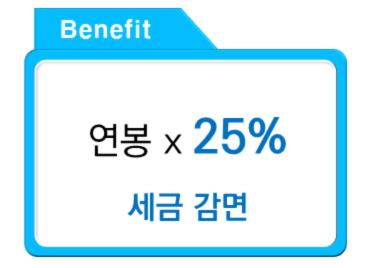


# 기업연구소는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.







혜택이 크기 때문에, 국세청의 엄격한 모니터링이 진행. 따라서 설립전은 물론이고 설립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수!!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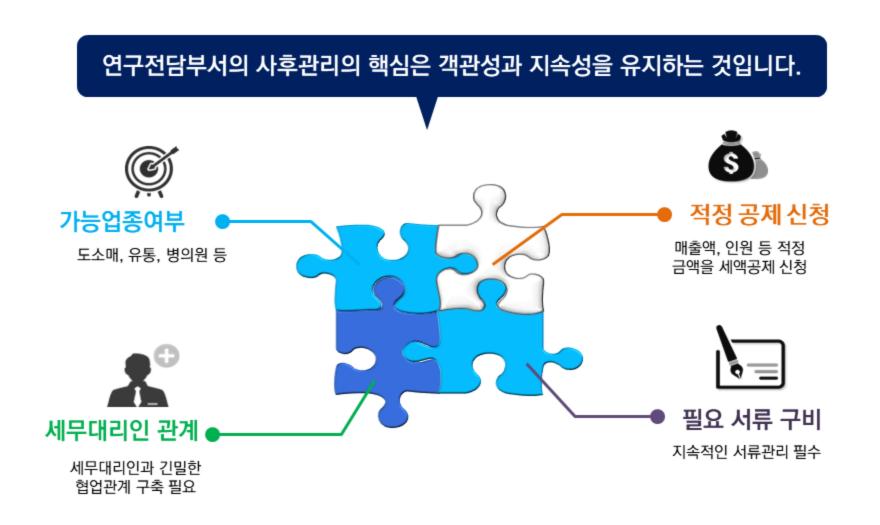
## 설립 후 사후관리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연구소 설립 **40**%

연구소 설립을 위해서는 물적요건과 인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. 사후관리 60%

연구소 사후관리 서비스는 세무적인 리스크 케어가 대부분을 차지하며, 이러한 시스템 없이 설립 후 지속적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향후 다양한 부작용을 갖게 됩니다.

# 기업연구소 사후관리 컨설팅 유의 사항



## 연구소 / 전담부서 사후관리 안내

### 1. 기업부설연구소 온라인 신고 작성자료 보관

- ①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내역서 보관
- ② 인사발령장, 경력증명서 보관
- ③ 연구원이력서, 졸업증명서보관
- ④ 온라인 신고 시 작성한 컴퓨터 파일보관
- ⑤ 매월 연구활동 내역을 간략히 정리하여 문서보관
- ⑥ 매년 회계사무실에 처리한 연구비용을 정리하여 문서보관

### 2. 연구개발활동조사 온라인 신고

- 기업부설연구소 정기신고의 경우 매년 4월 말일까지 하는 것을 기본원칙
- 법인의 결산 이후 연구인력 사항, 연구비용, 간단한 연구 활동내역을 정리하여 온라인신고 하는 것
  - ① 연구인력 사항은 변경사항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는 내용이며 신고 화면에 따라 입력
  - ② 연구비용은 회계사무실을 통하여 정리된 내역을 신고 화면에 따라 입력
  - ③ 연구 활동내역은 연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여 신고 화면에 따라 입력

## 연구소 / 전담부서 사후관리 안내

### 3. 회계처리 방안

-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『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』에 신고하여 취득한 국가(경영)인증서, 때문에 반드시 업체의 회계사무실에 통보하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
  - ①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인증서 회계사무실에 통보
  - ② 전담연구인력 및 연구원 명단 회계사무실에 전달 → ①, ②항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회계사무실에 전달
  - ③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전용 시설기자재 구입비용 별도정리
  - ④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답부서) 전용 연구개발용 일반경비 별도정리 → ③, ④항의 영수증에 별도 정리하여 회계사무실에 전달·통보
  - ⑤ 법인결산,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 공제사항을 확인 (조세특례법 81조)

#### ※ 주의사항

- 기업부설연구소의 『일반경비』는 연구용 활동에 사용된 경비만을 세액공제
- 기업부설연구소의 『연구시설』 구입비용은 연구전용 시설에만 세액공제 (생산업무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)

## 연구소 / 전담부서 사후관리 안내

### 4. 변경신고 처리방안

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신규인력, 연구공간의 장소 이동시 <u>30일 이내</u>『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』 인터넷사이트(http://www.koita.or.kr)를 통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기본원칙

- ① 연구인력 변경시 퇴사한 연구원은 온라인상에 삭제를 하고 증원된 연구원에 대하여는 신고
- ② 신규 연구원의 경우 졸업증명서, 경력증명서, 인사발령장을 온라인 신고
- ③ 연구장소 변경시 이동한 연구장소의 배치도면, 임대차계약서, 내부사진을 온라인으로 신고

### 5. 사후관리 강화

<u>사후관리 강화</u> (2020.1.1 이후 과세연도부터 적용):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<u>5년 동안 다음의 자료 보관</u>

일반 연구개발비	신성장 연구개발비
연구개발계획서, 연구개발보고서	연구개발계획서, 연구개발보고서, 연구노트

## 사전심사제도

### 사전심사제도

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<u>과세표준신고를 하기 전에</u> 지출한 비용이 연구·인력개 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<u>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</u>할 수 있습니다. (조특법시행령 9조 13항, 2020.1.1.부터 시행)

###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추징 사례

- <u>타 업무를 겸직</u>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공제
- <u>홍보, 영업, 고객대응 등의 업무를 겸직</u>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연구와 직접적 연관성 없으므로 공제 불가능
- <u>일반적인 관리·지원 용역</u>과 관련된 비용 공제
- 연구개발비 중 안전·보건관리 용역 비용을 세액공제하였으나, 이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세액공제 불가능